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5가단5383385 판결 [구상금등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2016. 7. 22.

판결 선고2016. 9. 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644,775원 및 그 중 51,379,251원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2016. 2. 17.까지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5. 2.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5. 2. 16. 접수 제1181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51,644,775원(대위변제금 51,379,251원+대지급금 265,524원) 및 그 중 51,379,251원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인 2015. 12.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 2016. 2. 17.까지 약정 연체이율에 따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2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피고 B은 2014. 6. 9. 피고 C으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14. 12. 3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 2) 피고 B은 위 변제기일까지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 B은 2015. 2. 12. 피고 C과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 16. 피고 C 명의로 주문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피고 B은 시가 233,039,4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화성시 D

지상 건물(이하 '화성시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채무로는 원고에 대한 51,379,251원의 위 구상금 채무, 용인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1억 원의 대출금 채무,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126,225,000원의 보증채무, 현대캐피탈에 대한 21,098,000원의 보증채무, 피고에 대한 1억 원의 채무 등 합계 398,702,25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4) 한편 화성시 건물에 관하여 2009. 9.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같은 해 9. 22. 한국토지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화성시 건물은 E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한국토지공사가 협의취득하기 위하여 위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위 법리와 갑 제1, 6,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실제 하나은행에 대위변제한 시점은 2015. 12. 4.이기는 하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가 2014. 11. 24. 주식회사 청룡가설산업에 대한 4,647,000원의 상거래채무를 연체하여 그 무렵 원고는 피고 회사 및 피고 B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취득한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약 7개월 후인 2015. 9. 8. 피고 회사의 하나은행에 대한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4개월 후 원고가 피고 회사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여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 B에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사해행위 성립여부 가)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하는데,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화성시 건물에 관한 위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로서 화성시 건물은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하여 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B의 유일한 적극재산이라 할 것인데, 피고 B이 피고 C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것은 피고 C에게만 우선변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당시 피고 B의 재산상태, 피고 회사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으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몰랐고, 피고 회사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그로 인하여 채무변제력을 갖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여 사업자금 목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와 C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문혜정

별지